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8

제 출 일 : 2026. 10. 21.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갑질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통한 대리 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대리인을 통한 갑질 신고 근거 신설(안 제6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부서협의 결과
  - 비용추계 : 미첨부 사유서 붙임
  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 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 - 규제심사 대상 여부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입법예고
  - 예고기간 : 2026. 8. 20. ~ 2026. 9. 9.(20일간)
  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남양주시 조례 제 호

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갑질 신고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) ①·② (생 략) <신 설>	제6조(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갑질 신고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.
③ ~ ⑤ (생 략)	④ ~ ⑥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
붙임1 **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○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

나. 재정 수반 요인

○ 조례 개정안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가(변호사, 노무사)에 의한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할 경우 전문가 자문료가 발생할 수 있음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 첨부 사유

- 갑질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통한 대리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대리신고 제도 운영 시 전문가 자문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(150만원 내외로 추정)으로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

4. 작성자

-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박호영

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

남양주

남 양 주 시

수신 감사관
(경유)
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(2026A경기남양041)

1. 감사관-8889(2026. 8. 6.)호와 관련됩니다.

2. 귀 부서에서 제출한 「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」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.

붙임 검토의견 통보서(2026A경기남양041) 1부. 끝.

여 성 아 동 과 장 [illegible].

2026. 8. 6.

주무관 박미연 여성정책팀장 송주희 여성아동과장 배진희

협조자

시행 여성아동과-23601 (2026. 8. 6.) 접수 감사관-8923 (2026. 8. 6.)

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남양주시청 별관 4층 (금곡동) / http://www.nyj.go.kr

전화번호 031-590-3965 팩스번호 031-590-2269 / ibicf726@korea.kr / 비공개(5)

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<table>
<tr><td>관리번호</td><td colspan="4">2026A경기남양041</td></tr>
<tr><td>정 책 명</td><td colspan="4">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소관부서</td><td>기관명</td><td colspan="3">경기도 남양주시</td></tr>
<tr><td>부서명</td><td colspan="3">감사관</td></tr>
<tr><td>담당자명</td><td>송호림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031-590-4719</td></tr>
<tr><td>성별영향평가서
제출날짜</td><td colspan="4">2026년 8월 6일</td></tr>
<tr><td>주요
성별영향평가
내용
(감사관)</td><td colspan="4">○ 갑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통한 대리 신고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 도모
- 대리인을 통한 갑질 대리신고 근거 신설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종합 검토 의견
(성별영향평가책임관)</td><td colspan="4">■ 개선사항 없음 □ 자체개선안 동의 □ 개선의견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’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’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</td></tr>
<tr><td>검토의견
반영계획서</td><td colspan="4">해당 없음</td></tr>
</table>

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

2026년 08월 06일

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

(담당자/연락번호 : 박미연/031-590-3965)

감사관장 귀하

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

남 양 주 시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(2026-39)[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]

「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」 개정(안)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○ 주요평가내용 :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
○ 평 가 결 과 : **원안동의**

붙임 1.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 1부.
2.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체크리스트 1부. 끝.

주무관	송효림	청렴윤리팀장	이경주	기술감사팀장	홍성환	대결 2026. 8. 5. 감사관	전결

협조자
시행 감사관-8831 접수
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선관 3층 감사관 (금곡동) / http://www.nyj.go.kr
전화번호 031-590-4719 팩스번호 031-590-2079 / riss@korea.kr / 비공개(5)

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

관 리 번 호	2026-남양주-39		
자치법규명	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		
평 가 담 당 부 서	감사관	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	행정7급 송호림
입 안 부 서	감사관	입안담당자 직급 및 성명	행정7급 송호림
평 가 결 과 보 고 일	2026. 8. 4.		
통 보 내 역	**원 안 동 의**		

관 련 조 문	검 토 결 과	조 치 사 항
-	-	-

2026년 8월 4일

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

(담당자 / 연락처 : 송호림 / 031-590-4719)

붙임4 규제심사 결과

남 양 주 시

수신 감사관
(경유)
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(「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」)

1. 감사관-8834(2026. 8. 5.)호와 관련됩니다.

2. **「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(안)**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, 해당 개정안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한 갑질 신고 접수 방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

3.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상 **행정규제*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**, 「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」에 따른 **규제심사 대상이 아님**을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* (행정규제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이나 조례·규칙에 규정되는 사항(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)

끝.

의 회 법 무 과 장 이봉규

주무관 **김보나** 규제개혁팀장 **안재현** 의회법무과장 **이봉규** 2026. 8. 5.

협조자

시행 의회법무과-9373 (2026. 8. 5.) 접수 감사관-8852 (2026. 8. 5.)

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(금곡동) / http://www.nyj.go.kr

전화번호 031-590-7320 팩스번호 031-590-2900 / q0249@korea.kr / 비공개(5)

붙임5 입법예고 결과

남양주

남 양 주 시

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제목 「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

1. 감사관-9388(2026. 8. 19.)호와 관련입니다.
2. 「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가. 개정 조례명 : 「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」
나. 입법예고 기간 : 2026. 8. 20.(목) ~ 9. 9.(수) / (20일간)
다. 입법예고 방법 : 시보 및 게시판
라. 입법예고 결과 : **의견없음**
마. 향후계획 :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
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

주무관	[redacted]	창업윤리팀장	[redacted]	감사팀장	[redacted]	대결 2026. 9. 11. 감사관	전결

협조자 의회법무팀장 김상협 의회법무과장 이봉규
시행 감사관-10445 접수
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신관 3층 감사관 (금곡동) / http://www.nyj.go.kr
전화번호 031-590-4719 팩스번호 031-590-2079 / rims@korea.kr / 비공개(5)

- 시민주권시대 함께 지키는 개인정보 -